

● 포 상 규 정(0408)

제정 2005. 1. 18. 규정 제165호
개정 2007. 1. 29. 규정 제223호
개정 2007. 7. 19. 규정 제25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외부인 및 단체에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도민 및 단체에 행한다. 다만, 필요한 때에는 도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

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사장이 행한다.

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·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
1. 경기주택도시공사 발전에 기여한 공적 이 현저한 경우
2. 건설공사집행규정에 의한 포상을 하는 경우

제6조(감사장) 사장은 공사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.

제7조(포상방법 및 부상)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·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절차)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공사의 살차단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사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. <개정 07.1.29>
② 제1항에 의한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. <개정 07.7.19>

제9조 <삭제 07.7.19>

제10조(포상시기) 포상은 정기적으로 연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
제11조(이중 포상금지)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
제12조(포상대장의 등재)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
부 칙<05. 1. 18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07. 1. 29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07. 7. 19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(제7조 제1항 관련)】

표창장

체 호

주소 또는 소속 :

직급(직위) :

성 명 :

(표창문)

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○ ○ ○

【별지 제2호 서식(제7조 제1항 관련)】

감 사 장

제 호

주소 또는 소속 :

직급(직위) :

성 명 :

(감 사 문)

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경 기 주 령 도 시 공 사 사 장 ○ ○ ○

【별지 제3호 서식(제8조 제1항 관련)】

| 공 적 조 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|--|-----|--|--|-----------|--|--|-----------|--|--|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성 명 | 한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생년월일 | | | | | | | | | | | | 군번 | | | | | | | | | |
| 본 적 (국 적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주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직 업 | | | | | | 소 속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직 위 | | | | | | 등급(직급·계급) | | | 근무기간·수공기간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추천훈격 | | | | | | 추천순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주 요 학 려 및 경 려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년 월 일 | | | 이 려 | | | 년 월 일 | | | 이 려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과 거 포 상 기 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년 월 일 | | | 내 용 | | | 년 월 일 | | | 내 용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조 사 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소 속 | | | | | | 직 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직 급 | | | | | | 성 명 | | | (인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추 천 관 직 위 : 성 명 : (인)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공 적 사 항

【별지 제4호 서식(제11조 관련)】

포 상 대 장

| 호수 | 포상 연월일 | 포상 종류 | 공적 기간 | 피포상자 | | | | 포상을하게 된공적개요 | 기념품 또는 부상 | 비고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| | 직위 또는 직명 | 소속 또는 주소 | 성별 | 성명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
※ 포상대장은 표창장·감사장으로 구분하여 등재한다.